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6. 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3월 5일, 서삼석의원 등 12인

나. 회부일자: 2025년 3월 6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 4. 23.)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2026. 9. 16.)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 9. 17.)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서삼석 의원)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주도적 성장을 촉진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정책의 수립·집행을 위하여 중앙정부의 권한 및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됨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마리나항만관리규정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마리나선박 대여업 제도가 신설된 이후 2023년 12월 기준 전국 239개사에 320여 척의 선박이 등록되어 있는데, 현행법은 등록사업자 등이 준수하여야 할 안전관리규정이 미비하여 해양사고 발생의 위험성 상존 및 이에 따른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마리나선박 대여업자와 이용자 등의 안전운항을 위한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등 마리나선박 이용객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음주 및 약물복용 등의 상태에서 마리나선박을 운항한 등록사업자에 대해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마리나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마리나업을 한 자 중 일부를 벌칙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마리나업 관련 제도를 정비·개선하여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활성화하여 마리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최선영)

가. 마리나항만시설 관리권한의 지방 이양

(1)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해양수산부장관의 마리나항만관리규정(이하 “관리규정”이라 한다) 수리 및 변경요청 권한을 시・도지사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2항·제3항).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관리규정) ① (생 략) ② 관리운영권자는 관리규정을 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규정의 내용이 현저히 공익에 반하거나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관리규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시・도지사----------. ③ 시・도지사는----------.

(2) 검토의견

□ 현행법 제24조에 따르면 마리나항만시설 관리운영권자는 해양수산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규정을 정하여야 하고, 관리운영권자는 관리규정을 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규정의 내용이 현저히 공익에 반하거나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그 내용을 변경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한편, 현행법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라[1] 관리규정 통보의 수리 및 내용 변경요청 사무는 해양수산부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음.

□ 그런데, 2023년 2월 국무조정실의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에 따라 마리나항만 개발 이후, 지자체의 실정에 맞는 효율적이고 특화된 운영을 통해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리나항만 관리규정 관리·감독권을 시·도에 이양하고자 하는 과제가 추진된 바 있음.

□ 이에 개정안은 관리규정 수리 및 변경요청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현행 해양수산부 지방해양수산청장)하려는 것으로, 현재 마리나항만구역 지정 현황을 보면 그 관리 및 운영을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이 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마리나항만시설 관리권한이 지방에 이양되는 경우 각 지역 사정에 맞춘 마리나항만시설의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1)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10. 법 제24조제2항·제3항에 따른 관리규정 통보의 수리 및 내용 변경 요청

[표] 마리나항만구역 지정・운영주체 현황

권역		개소	대상항만(고시)	운영주체
수도권	경기	3	김포터미널('11.1.6.),	워터웨이플레스(K-WATER)
			제부('22.11.11.),	경기평택항만공사(경기도)
			안산 방아머리('22.6.27.)	미정(사업 준비중)
	인천	1	왕산('15.7.31.)	㈜왕산레저개발(대한항공)
전남권		2	목포('14.6.30.),	목포마리나(세한대학교 산학협력단)
			여수 웅천('22.6.17.)	미정(사업 준비중)
경남권		2	충무('14.6.30.),	금호통영마리나리조트
			진해명동('23.5.30.)	미정(공사중)
경북권		1	후포('16.4.8.)	울진군
제주권		1	중문('15.4.1.)	퍼시픽리솜
합 계		**10**		

- 특히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통과됨에 따라[2], 25년 5월부터 마리나업 등록 등의 규정이 해양수산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될 예정으로, 개정안은 이러한 지방이양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임.

□ 이에 대하여 관계부처인 해양수산부는 지자체의 권한과 제도 보강을 위하여 중앙권한을 지방에 이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개정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2) 2025. 5. 1. 시행예정

[표] 마리나항만법 규정 관련 중앙권한 지방이양 현황

구분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대안)	개정안	비고
마리나업의 등록·승계 (28조의2 및 28조의3)	해양수산부장관 → 시·도지사		25. 5. 1. 시행 예정
휴업·폐업 신고 (28조의4)	해양수산부장관 → 시·도지사		
등록사업자 의무 (28조의5)	해양수산부장관 → 시·도지사		
시정명령, 등록취소 (28조의6 및 28조의7)	해양수산부장관 → 시·도지사		
등록기준 적합여부 검사·확인 등 (제33조의2)	해양수산부장관 →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과태료 부과 (제41조)	해양수산부장관 →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마리나항만관리규정 (안 제24조)		해양수산부장관 → 시·도지사	개정안

나. 마리나선박 대여업자 등에 대한 안전의무 강화

(1)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마리나선박 대여업자와 그 종사자에게 구명조끼 착용 지시 의무, 안전운항 관련 사항 선내 게시 및 안내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5제4항·제5항 신설).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8조의5(등록사업자의 의무) ① ~ ③ (생 략)	제28조의5(등록사업자 등의 의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마리나선박 대여업자와 그 종사자는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리나선박의 경우에는 승객 전원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객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아니하면 승선을 거부할 수 있다.
<신 설>	⑤ 마리나선박 대여업자와 그 종사자는 안전운항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선내에 게시하고, 출항 전에 승객에게 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1. 기상상태 2. 출항 전 안전점검 결과 3. 구명조끼, 소화기 등 안전설비

	의 위치 및 사용법 4. 유사시 대처요령 5. 그 밖에 안전 및 선내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검토의견

□ 마리나선박 대여업은 현행법 제28조의2에 따를 때 2톤 이상의 마리나선박을 빌려주는 업(마리나선박을 빌린 자의 요청으로 해당 선박의 운항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의미하고, 24년 12월 기준 총 256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음.

【 마리나업 등록 현황('24.12월) 】

구분 \ 기관		부산	인천	여수	마산	울산	동해	군산	목포	포항	평택	대산	제주	합계
총계(업체)		**99**	**25**	**37**	**54**	**4**	**24**	**3**	**16**	**15**	**39**	**5**	**23**	**344**
대여업	업체	88	12	28	35	1	17	2	12	15	30	0	16	256
	선박	102	22	36	60	1	20	3	16	16	38	0	30	344
보관 계류업	업체	8	6	7	19	1	6	1	1	0	5	2	6	62
정비업	업체	3	7	2	0	2	1	0	3	0	4	3	1	26

□ 개정안 제28조의5제4항·제5항의 경우 "마리나선박 대여업자와 그 종사자"에게 ①승객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고, ②안전운항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선내에 게시하고, 출항 전에 승객에게 기상상태 등의 사항을 안내하도록 하는 등 안전관리에 관한 의무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마리나선박 이용자의 안전관리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 참고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등 유사입법례에서도 구명조끼 착용 및 선내 안전사항 게시·안내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표] 유사 입법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12조(유선사업자 등의 안전운항 의무) ② 유선사업자와 선원은 다음 각 호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매뉴얼로 작성하여 유선장 및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유선의 선실이나 통로에 비치하고 출항하기 전에 승객에게 영상물 상영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1. 안전한 승선·하선의 방법 2. 선내 위험구역 출입금지에 관한 사항 3. 인명구조장비의 위치 및 사용법 4. 유사 시 대처요령 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안전에 관한 사항 ④ 유선사업자와 선원은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형 유선의 경우에는 승객 등 승선자 전원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9조(낚시어선업자 등의 안전운항 의무 등) ③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안전운항을 위하여 낚시어선에 승선한 승객 등 승선자 전원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객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아니하면 승선을 거부할 수 있다. ④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출항하기 전 승선한 승객에게 안전사고 예방 및 수산자원 보호,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1. 안전한 승·하선 방법, 인명구조 장비와 소화설비의 보관장소와 사용법, 비상신호, 비상시 집합장소의 위치와 피난요령, 인명구조에 관련된 기관의 유선번호 및 유사시 대처요령 등 안전에 관한 사항 2. 포획금지 체장·체중 등 수산자원보호에 관한 사항 3. 쓰레기 투기 금지 등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 다만, 마리나선박대여업자가 이와 같은 안전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그 적용대상인지 여부를 예측 가능하도록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는데, 개정안에서는 이를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으로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음.

유사입법례와 비교해 볼 때,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서는 선박의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형 유선'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위임대상이 보다 구체화되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여짐.

□ 이에 대하여 관계부처인 해양수산부는 마리나선박 대여업자와 종사자로 하여금 탑승객의 구명조끼 착용을 유도하고, 출항 전 안전에 관한 사항 안내 등 의무를 부과하여 마리나선박 이용자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하는 개정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임.

다. 마리나업 등록사업자의 의무보험 제도 개선

(1)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마리나업 중 마리나선박 정비업의 경우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를 면제하고, 보험회사가 등록사업자에 대해 보험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며, 이 법에 따른 보험금을 받을 권리를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8).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8조의8(보험 가입 등) 등록사업자는 그 종사자와 이용자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8조의8(보험 가입 등) ① ----------. 다만, 마리나선박 정비업은 제외한다.
<신 설>	② 보험회사는 등록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없다.
<신 설>	③ 이 법에 따른 보험금을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

(2) 검토의견

□ 현행법 제28조의8에 따르면 등록사업자는 그 종사자와 이용자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마리나업 등록사업자는 ①마리나선박 대여업, ②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③마리나선박 정비업으로 구분되어 있고 이 중 마리나선박 정비업은 마리나선박에 대한 정비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을 의미하는데, 정비업의 경우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종사자 피해 보전이 가능하여 추가 보험 규정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한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비계획에 따른 제도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재난안전의무보험[3]에 대한 보험계약 체결 거부 제한, 보험금 청구권의 압류 금지 등 규정이 신설되면서 마리나업 등록사업자에 대하여도 보험사의 보험계약 체결 거부 금지 및 보험금 청구권 압류 금지 등을 규정하는 등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 보험 가입 및 계약체결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되는 경우 또는 보험의 보험금 청구권이 압류되는 경우 등에는 해당 보험에 의무적으

---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의2. "재난안전의무보험"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共濟)로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일정한 자에 대하여 가입을 강제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한다.

로 가입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구제하고자 하는 취지 달성이 곤란해지는 측면이 있음.

□ 이에 개정안은 마리나선박 정비업의 경우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를 면제하고, 보험회사가 등록사업자에 대해 보험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며, 이 법에 따른 보험금을 받을 권리를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보험 등 가입 의무와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고 마리나 이용자 피해구제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보임.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2에서는 재난안전의무보험에 관한 법령이 갖추어야 할 기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①보험회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재난안전의무보험에 대한 가입 요청 또는 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보험계약 등을 해제·해지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할 것, ②재난·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자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압류금지 등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마련할 것을 그 기준으로 하고 있는 바 현행법에 해당 기준 등을 명시하여 마리나 이용자 피해구제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은 “보험 계약의 체결 거부”를 할 수 있는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국민의 재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행정입법에 위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위임 범위를 제한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4)]

4) 참고로, 유사 입법례에서는 “보험 계약의 체결 거부”를 할 수 있는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5(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의 체결의무 및 가입강요 금지) ① 보험회사는 다중이용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때에는 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4조(계약의 체결 의무) ① 보험회사등은 자동차보유자가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없다.

라. 마리나업 등록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등 사유 및 마리나선박 대여업의 운항구역 등 제한 신설

(1)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①마리나업 등록사업자가 술에 취한 상태 또는 약물·환각물질 영향으로 정상적 운항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안 제28조의7제10호·제11호 신설),

②시·도지사가 기상악화 등의 경우 마리나선박 대여업자에 대하여 운항구역·운항시간 제한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이를 위반한 경우 등록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마리나선박을 운항한 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7제12호 및 제28조의13 신설 등).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19819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9819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8조의7(등록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등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	제28조의7(등록취소 등) ① ------ ---------- ---------- ---------- ----------

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해상교통안전법」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마리나선박을 운항한 경우
<신 설>	11. 「해상교통안전법」 제40조제2호를 위반하여 약물·환각물질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항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항을 한 경우
<신 설>	12. 제28조의13제1항에 따른 운항구역 또는 운항시간의 제한 명령이나 영업의 일시정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8조의13(영업의 제한 등)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마리나선박 대여업자에게 운항구역 또는 운항시간의 제한이나 영업의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기상특보 발효 등 운항해역 인근의 기상·해수면·내수면의 상태가 악화된 경우

	2. 운항해역 인근에서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3. 운항해역 인근에 부유물질 등 장애물이 많은 경우 4. 그 밖에 마리나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소멸되었거나 완화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운항구역 또는 운항시간의 제한이나 영업의 일시정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신 설>	제39조의2(벌칙) 제28조의13제1항에 따른 운항구역 또는 운항시간의 제한 명령이나 영업의 일시정지 명령을 위반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	제40조(양벌규정) ----------제39조까지 및 제39조의2----------. ----------

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검토의견

(가) 마리나업 등록사업자의 등록취소 사유 추가

□ 개정안 제28조의7제10호・제11호는 마리나업 등록사업자가 「해상교통안전법」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마리나선박을 운항하거나 「해상교통안전법」제40조제2호를 위반하여 약물・환각물질 영향으로 정상적 운항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한 경우 시・도지사가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5)]

□ 개정안은 주취・환각 운항 등 마리나선박의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이 있는 행위를 한 경우 해당 마리나등록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정지를 명함으로써 해양사고 및 인명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서 「해상교통안전법」제39조제1항 위반을 등록취소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 그 위반 주체와 관련하여 등록사업자가

5)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 개정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2025. 5. 1. 시행예정이고, 제28조의7(등록취소 등)에서 등록취소의 주체는 해양수산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개정될 예정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항한 경우만을 의미하는지, 혹은 등록사업의 요건인 다른 인력이 운항한 경우를 포괄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고 보여짐.

또한, 일부 마리나선박의 경우에는 「해상교통안전법」 상의 적용대상 선박이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짐.

[표] 마리나선박 대여업의 인력 기준

구 분	등 록 기 준
다. 인력기준	1) 마리나선박 대여업자 또는 그 종사자 중 1명 이상은 다음의 면허를 갖출 것 가) 해당 마리나선박이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해기사 면허 중 같은 법 제11조제1항의 승무기준에 따라 해당 선박에 요구되는 각각의 해기사 면허 나) 해당 마리나선박이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세일링요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제1급 조종면허 다) 해당 마리나선박이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일링요트에 해당하는 경우: 「수상레저안전법」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요트조종면허 라) 동력기관이 설치되지 않은 마리나선박만을 이용하여 마리나선박 대여업을 하려는 경우: 「수상레저안전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제2급 이상의 조종면허 2) 마리나선박 대여업자 또는 그 종사자 중 1명 이상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나) 마리나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운항구역 제한 근거 마련

□ 다음으로, 개정안 제28조의13은 기상악화, 해양사고 발생 등으로 마리나선박운항에 위험이 존재할 경우 시・도지사가 마리나선박 대여업자에게 운항구역 또는 운항시간의 제한이나 영업의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제한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6)]

이와 더불어 안 제28조의7제12호는 운항구역·운항시간 제한 명령 등을 위반한 등록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에 대하여, 안 제39조의2는 운항구역·운항시간 제한 명령 등을 위반하여 마리나선박을 운항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려는 것임.

□ 개정안은 선박 운항여건 악화에 따른 마리나선박의 사고위험을 고려한 영업의 제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해양사고 및 인명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영업 제한에 대한 사업자 및 이용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이행력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등록취소와 제재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또한, 마리나선박 대여업과 유사 업종 간 안전규정을 비교할 때 마리나선박 대여업의 경우 출항통제 및 영업제한 등에 대한 규정이 미비한 상황(첨부1 참고)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개정안은 타당한 측면이 있음.

- 지난 5년간 사망 등 중대 해양사고는 없었으나, 선박 부유물 감김 등

6)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 개정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2025. 5. 1. 시행예정이고, 제28조의7(등록취소 등)에서 등록취소의 주체는 해양수산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개정될 예정임.

연평균 1.4건의 해양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해양사고 발생 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것은 그 필요성이 있음.

□ 이에 대하여 관계부처인 해양수산부는 기상악화 및 해양사고 발생 등으로 마리나선박의 운항에 위험이 예상될 때 해양사고 및 인명사고 예방을 위하여 개정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마. 마리나선박 이용자의 준수의무 신설

(1)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마리나선박 이용자로 하여금 마리나선박 대여업자 등의 구명조끼 착용 지시 의무 등을 준수하도록 하고, 마리나선박 이용자가 마리나선박을 대여하여 스스로 운항하려는 경우에도 구명조끼 착용 지시 의무 및 마리나선박 대여업자, 종사자 또는 긴급구조기관과 연락이 가능한 통신장비를 갖추고 연락체계를 유지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8).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8조의14(마리나선박 이용자의 준수사항) ① 마리나선박을 이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리나선박 대여업자나 종사자의 구명조끼 착용 지시나 그 밖의 안전운항 및 위해방지를 위한 주의사항 또는 지시를 위반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마리나선박의 장치 또는 기구 등을 조작하거나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마리나선박 대여업 또는 종사자의

	허락 없이 출입하는 행위 ② 마리나선박 이용자가 마리나선박을 대여하여 스스로 운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필요한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리나선박에 승선한 승객 전원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할 것 2. 마리나선박 대여업자, 종사자 또는 긴급구조기관과 연락이 가능한 통신장비를 갖추고 연락체계를 유지할 것

(2) 검토의견

□ 개정안 제28조의14는 마리나선박 사업자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뿐만 아니라 마리나선박 이용자와 대여자의 경우에도 안전관리 준수의무를 지키도록 하는 것이 선박 내 안전에 중요하므로 필요한 규정으로 보임.

- 유사 입법례에서도 선박에 탑승하는 승객에게 정당한 명령 준수의무, 구명조끼 착용 의무 등을 부여하고 있음.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36조(낚시어선 승객의 준수사항)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은 안전운항을 위하여 낚시어선에 승선한 승객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낚시어선의 승객은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의 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1. 제29조제3항에 따른 구명조끼 착용에 관한 사항
「해운법」
제21조의3(여객의 금지행위) 여객은 여객선등의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여객선등의 안전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안전관리종사자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 2. 조타실(操舵室), 기관실 등 선장이 지정하는 여객출입 금지장소에 선장 또는 해원의 허락 없이 출입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선등의 장치 또는 기구 등을 조작하는 행위 4. 그 밖에 여객의 안전과 여객선등의 질서유지를 해하는 행위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바. 마리나항만 준공 전 사용신고 미이행에 대한 처벌규정 완화 등 벌칙 규정 정비

(1)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마리나항만 준공 전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사용한 경우 기존 벌칙규정을 과태료로 완화하고, 미등록 마리나선박 정비업자 중 「선박안전법」에 따른 지정 정비사업장, 「어선법」에 따른 지정 정비사업장 또는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선박수리업 등록을 한 자는 벌칙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2호 삭제, 안 제38조제3호 단서 신설 등).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8조(벌칙)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8조제4항에 따른 준공 전 사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토지나 시설을 사용한 자	2. < 삭 제 >
3. 제2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마리나업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	3. ----------

로 등록한 자 <단서 신설>	-----자. 다만, 제28조의2제1항 제3호에 따른 마리나선박 정비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선박안전법」 제20조에 따른 지정 정비사업장, 「어선법」 제25조에 따른 지정 정비사업장 또는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에 따라 선박수리업 등록을 한 자는 제외한다.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4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41조(과태료)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제18조제4항 단서에 따른 준공 전 사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토지나 시설을 사용한 자
<신 설>	3. 제28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마리나선박 승객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
<신 설>	4. 제28조의5제5항을 위반하여 안전운항에 관한 사항을 선내에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승객에게 안내하지 아니한 자
2. (생 략)	5. (현행 제2호와 같음)
<신 설>	6. 제28조의14를 위반하여 마리나선박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2) 검토의견

(가) 준공전 사용 미신고 관련 벌칙규정 완화

□ 현행법 제18조에서는 준공검사를 거쳐 공사가 지정한 내용대로 시행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준공확인 절차를 두고 준공확인증명서를 내주도록 하고 있음.

다만,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준공확인증명서를 받기 전에는 개발공사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시설 등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7] "준공 전 사용신고"를 한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예외적인 규정을 두고 있고, 사용신고 없이 토지나 시설을 사용한 경우에 대해서는 현행법 제38조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개정안은 마리나항만 준공 전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사용한 경우 벌칙 조항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완화하려는 것으로, 이는 형벌의 보충성(선 행정제재, 후 형벌), 비례성(위법행위와 처벌간 균형) 등 원칙에 따라 형벌규정을 개선하려는 정부의 경제형벌 개선과제 추진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해양수산부에서는 설명하고 있음.

7)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준공 전 사용의 신고)사업시행자가법 제18조 제4항단서에 따라 준공 전 사용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준공 전 사용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용하려는 토지 또는 시설의 공정 현황이 포함된 사용계획서
2. 사용하려는 토지 또는 시설의 사용 가능 여부 및 안정성 등에 관한 공사감리자의 의견서
3. 해당 토지 또는 시설의 완성단계 도면 및 사진

□ 다만, 제18조의 준공확인의 경우 공사가 지정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하는 절차로서 이를 거치지 않은 경우는 시설의 안전성 등의 확보를 담보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준공확인 전에 예외적으로 신고를 통해 이를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므로 보다 엄격히 관리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짐.

- 이에 대하여 법무부에서도 마리나항만 준공 전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예외적으로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준공 전 토지 등의 안전성 등을 점검하여 이용자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호법익이 매우 중대하므로 마리나항만 준공 전 미신고 위반행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것인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나) 마리나선박 정비업 관련 처벌 대상 완화

□ 현행법 제28조의2에서는 마리나업의 종류로 마리나선박에 대한 정비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을 마리나선박 정비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현행법 제38조제3호에서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마리나업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에 대해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마리나선박 정비업의 경우 「선박안전법」에 따른 지정 정비사업장, 「어선법」에 따른 지정 정비사업장 또는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선박수리업 등록을 한 자와 비교를 하였을 때 그 시설 및 인력기

준이 기준이 높지 않은데, 보다 강화된 시설과 인력기준을 갖춘 다른 정비업에서 이를 수행하는 경우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표] 업종별 기준 비교

구분		마리나선박 정비업	소형선박 지정정비사업장	어선 지정정비사업장	선박수리업
관련법령		마리나항만법 제28조의2	선박안전법 제20조	어선법 제25조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
행정절차		정비업 등록	사업장 지정	사업장 지정	수리업 등록
정비·수리 결과		-	합격 증서발행	제조·정비 확인 증서발행	-
등록기준	시설기준	● **정비시설**(면적 20㎡) 소유 또는 사용권	● 소형선박 **정비** 또는 **검사 작업장** ● 정비 부품 또는 선박 보관 장소	● 어선 **정비** 또는 **검사 작업장** ● 정비 부품 또는 용품 보관 장소	● 항만의 급지별 구분된 **공구 창고** 또는 **공장**(면적 30~20㎡) ● 자본금 5천만원 이상
	설비기준	-	● 기관설비(드릴링머신 등) ● 검사·시험설비 * 파괴검사, 수압·유압 시험, 육상시운전 설비	● 기관설비(드릴링머신 등) ● 검사·시험설비 * 파괴검사, 수압·유압 시험, 육상시운전 설비	-
	인력기준	● **마리나선박 정비사** * 마리나전문인력양성 기관의 교육 이수	● 선박검사 **관리책임자** * 산업기사 제조·정비·검사 5년이상 책임 경력 등 ● 선박 자체 검사자 * 제조·정비·검사 5년이상 등	● 선박검사 **관리책임자** * 산업기사 제조·정비·검사 5년이상 책임 경력 등 ● 어선용품 자체 검사자 * 제조·정비·검사 5년이상 등	-
	기타기준·서류	-	● (조직) 정비, 검사 조직 ● (규정) 검사설비 교정 ● 법령·기록·검사 관리 * 정비·검사 도면, 국내외 법령, 작업·검사· 설비 관리 기록, 배상청구 정비공정, 외주관리 등	● (조직) 정비, 검사 조직 ● (규정) 검사설비 교정 ● 법령·기록·검사 관리 * 정비·검사 도면, 국내외 법령, 작업·검사· 설비 관리 기록, 배상청구 어선 정비공정, 외주관리 등	● 사업계획서 ● 법인인 경우 정관 ● 선박수리를 위한 항만시설 사용허가서

□ 이에 개정안은 미등록 마리나선박 정비업자 중 「선박안전법」에 따른 지정 정비사업장, 「어선법」에 따른 지정 정비사업장 또는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선박수리업 등록을 한 자는 벌칙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

임.

다만, 형벌 조항은 금지 또는 명령의 위반에 대한 결과라는 점에서 처벌의 전제조건이 되는 행위나 요건은 본문에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이는 바, 벌칙 규정에서만 삭제하는 것보다는 법 체계적 통일성을 위해 마리나선박 정비업과 유사한 혹은 기준이 더 강화된 자격이 있는 자를 마리나선박 정비업으로 간주하는 식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성이 있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법안심사소위원장: 김선교)

이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법률안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

8. 기타 사항

없음